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설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맹진영  
(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맹진영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에 동  
참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촉구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  
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에 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할 것을 건의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촉구건의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